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한화진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동물복지를 제고하기 위해 동물원 및 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동물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금지 등을 규정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86호, 2022.12.13. 공포, 2023.12.14.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허가 절차와 금지행위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안전·질병관리 및 휴원·폐원시 동물관리 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검사관 및 거점동물원 운영을 통해 동물원·수족관 운영자의 관리능력 및 동물 서식환경을 개선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동물원 및 수족관 제외 시설 규정 개선(안 제2조)

동물원의 경우 현행 가축만을 보유하거나 애완동물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시설을 동물원에서 제외하는 방식에서 가축 및 반려동물 개체수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동물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수족관의 경우 관상어 판매시설과 수산생물 도·소매업을 수족관에서 제외하여 허가 대상 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함

나.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 수립 방법(안 제3조 및 제4조)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 및 시·도별 계획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우므로, 동물관리위원회 자문, 관계기관 통보 및 대국민 공개, 계획 변경 기준 등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명시

다. 동물원 및 수족관 허가요건 및 절차(안 제9조)

현행법상 동물원·수족관은 등록기준 충족만으로 시설 운영이 가능하여 동물 복지 및 질병·안전관리에 취약하므로, 동물 서식환경 및 전문인력 기준, 질병·안전관리 및 휴원·폐원시 관리계획 제시 등 허가요건을 강화하고, 변경허가 기준 신설 및 허가권자의 현장조사 등 동물원·수족관 관리 강화를 위한 제반 절차를 규정

라. 과징금 산정기준 및 과징금 부과 절차(안 제10조)

과징금 산정방법, 영업정지 1일당 부과금액, 과징금 부과 통지 및 납부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

마. 동물원 및 수족관 검사관의 자격요건 및 위·해촉(안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

검사관 제도 도입에 따라 검사관의 자격요건과 검사관의 지원이 필요한 업무를 규정하고, 검사관 위촉 인원 및 시·도지사 추천 등 위촉 방법과 부정확한 방법으로 위촉되는 등 해촉할 수 있는 사유 명시

바. 오락 등 목적으로 동물의 스트레스 유발 행위 금지(안 제14조)

관람객들의 동물 체험활동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동물들이 스트레스

를 받거나 영양상태가 불량해지는 경우가 만연하므로 올라타거나 만지게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되, 허가 신청 시 교육 및 체험 계획에 포함하여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규정

사. 동물원 및 수족관 운영자의 동물 질병관리 방법(안 제15조)

질병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질병 발생 시 적절한 조치가 어려우므로, 상시·정기검사 주기 및 동물 분류군별 검사방법을 정하고 관계기관 통보 및 전문기관에 검사 의뢰 등 이행사항 명시

아. 교육대상자 및 기록 보존·제출(안 제16조 및 제17조)

수의사, 사육사 외 전문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및 1년 이상 연속 근무자를 교육대상자로 지정하여 적정 교육을 받도록 하고, 동물 개체수 및 동물 반입·반출 자료 등 보존대상 및 보존기간을 명시하여 주요 자료가 적정하게 관리·제출되도록 규정

자. 조치명령 이행기간 및 기간연장, 이의신청 근거 마련(안 제18조)

차. 거점동물원·수족관 지정 권역 구분 및 지정 요건(안 제19조)

거점동물원·수족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지정하고, 거점동물원·수족관의 업무로써 동물 서식환경 개선 및 교육·체험 계획에 대한 자문을 포함하며, 최소 면적기준 및 인력 기준 등 지정요건을 정하여 우수한 기관이 지정받도록 규정

카. 국가가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비용지원 범위 명시(안 제20조)

사육 및 안전관리 시설 설치, 동물 질병치료 등 비용지원 사업 명시

타. 권한 및 업무를 유역·지방환경청장, 지방해양수산청장, 국립생태원장

에게 위임 및 위탁(안 제21조 및 제22조)

과.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제23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범위) 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야생동물 또는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10종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시설에서 보유 및 전시하는 야생동물 또는 가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유 및 전시하는 종 또는 개체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1.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만을 보유한 시설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축인 경우
2. 「동물보호법」 제2조제1의3에 따른 반려동물인 경우

②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양생물 또는 담수생물을 전체 용량이 300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체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수조에 담아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애완동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시설(「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상어를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나.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수산생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시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변경·시행 등) 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동물보호 및 복지 관련 대국민 교육 및 홍보 계획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③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

게 통보하고,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의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④ 종합계획 중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종합계획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제4조(시·도별계획의 수립·변경·시행 등) ① 시·도지사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관할구역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시·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해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도별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2. 제3조제2항의 사항

③ 시·도지사는 시·도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7조제2

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이하 “시·도 위원회”라고 한다)의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도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내용을 해당 기관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⑤ 시도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도별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종합계획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제5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과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동물원 및 수족관 관련 분야별로 각각 9명 이내로 하고, 위촉하는 위원은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1. 동물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수족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동물복지 또는 사육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또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로서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동물의 보호와 건강·질병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동물원 및 수족관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동물 관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 보유동물의 관리 및 복지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④ 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

으로 하며,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촉 당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6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자문 내용)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동물원 및 수족관 내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사항
2.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동물의 복지와 서식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동물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법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 등의 계획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동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 2명(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공동으로 소집하는 경우 교대로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
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
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공동
위원장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1명씩 지
명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동물원 및 수족관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동물원 분과위원회와 수족관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을 소관 분야별 위원으로

구성하고, 환경부차관은 동물원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해양수산부차관은 수족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에 간사 1명씩을 두며, 제7조제6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 중 환경부 소속 간사는 동물원 분과위원회의 간사를, 해양수산부 소속 간사는 수족관 분과위원회의 간사를 겸임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동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은 “분과위원”으로 본다.

제9조(허가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및 체험 계획과 보유동물 복지증진 계획을 말한다.

③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각각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유동물 종별 서식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의 명세서, 내부·외부 사진 및 평면도
2.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유동물 질병관리계획서
 4.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 안전관리계획서
 5.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동물원의 휴·폐원 또는 수족관의 휴·폐관(이하 “휴·폐원”이라 한다) 시 보유동물 관리계획서
 6. 제9조제2항에 따른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및 체험 계획서
 7. 제9조제2항에 따른 보유동물 복지증진 계획서
- ④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항제1항 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는 사후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1. 허가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자료 1부
 2. 동물원 또는 수족관 허가증 원본
- ⑤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의 대표자 또는 소재지
 2. 동물원의 사육시설 면적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 받을 당시보다 100분의 10이상 감소하는 경우
 3. 수족관의 수조 바닥면적이 100분의 30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4. 허가 또는 변경허가 받을 당시보다 전문인력이 감소하는 경우

5. 인수공통감염병 등 보유동물의 질병관리계획에 관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6. 탈출방지 등 보유동물의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7. 휴·폐원 시 보유동물의 관리계획에 관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8.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및 체험 계획에 관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⑥ 허가권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허가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현장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현장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현장조사 개시일 15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현장조사의 목적
2. 현장조사 기간
3. 현장조사 범위와 내용
4. 허가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또는 준비사항
5. 그 밖에 당해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⑦ 허가권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과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 중 허가권자가 지정한 검사관이 함께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

⑧ 현장조사를 하는 공무원과 검사관은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조사 결과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등을 고려하여 허가 및 변경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⑨ 허가권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해야 한다.

⑩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3항 각 호의 항목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0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허가권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납부받은 사실을 지체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징수절차 등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동물원 및 수족관 검사관 운영)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2.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7년 이상 보전·사육·연구 등의 업무에 종사한 자
3. 그 밖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 운영·관리와 동물복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10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②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 지원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 확인 지원
3. 그 밖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허가권자가 요청하는 사항

③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사관증을 말한다.

제12조(검사관의 위촉)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동물원 검사관 및 수족관 검사관의 수는 각각 40인 이내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관을 위촉하려는 경우 시·도 지사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촉한 검사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검사관에서 해촉된 사람은 발급받은 검사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검사관에서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검사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3조(검사관의 해촉)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관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촉받았거나 자격요건 등 위촉 사유가 상실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관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여 현저히 부실하게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관의 업무를 수행하여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 또는 점검업무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검사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검사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

우

제14조(금지행위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라 함은 보유동물에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및 체험 계획에 포함된 행위는 제외한다.

1. 보유동물에 올라타거나 관람객에게 올라타게 하는 행위
2. 관람객이 보유동물을 만지게 하거나 이를 방치하는 행위
3. 관람객이 보유동물에게 먹이를 주게 하는 행위

제15조(질병관리)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육사로 하여금 보유동물의 건강상태를 매일 육안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 중 하나 이상의 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양상태, 피부 및 피모(깃털)상태, 외상 여부 등을 모두 검사하는 육안검사
2. 부유법, 직접도말법 또는 이에 준하는 분변검사
3. 방사선 촬영, 초음파촬영 또는 이에 준하는 영상진단검사
4. 혈액화학검사, 혈구검사 또는 이에 준하는 혈액검사

②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른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경우: 농

림축산식품부장관

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 중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전염성이 높은 질병인 경우: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 중 같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인 경우: 질병관리청장

③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 또는 검사를 하였으나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해당 질병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해당 질병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검사를 요청한 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제4항에 따른 검사결과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권자와 동물원 및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야생동물 질병 관리를 위해 보유동물 현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교육대상자)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의 수의 및 수산질병관리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2.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1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 중인 사람

제17조(운영·관리 기록의 보존 및 제출) ① 법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원 또는 수족관 보유동물 종 및 개체 수: 10년

2. 보유동물의 반입, 반출, 증식 및 폐사에 관한 기록: 10년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유동물 건강상태 검사에 관한 기록: 5년

4. 법 제20조제4호에 따른 사항: 5년

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와 동물원 및 수족관의 연간 개방 일수를 매년 2월 말일까지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소명하는 자에 대해서는 30일의 범위에서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자료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조치명령) ① 허가권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조치명령의 내용 등을 통지해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 운영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기간 이내에 조치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이행기간 내에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 1년 이내
2. 개선 또는 보완을 위하여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2년 이내
3. 그 밖의 경우: 6개월 이내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 운영자는 조치명령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이의신청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치명령을 수정, 보완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19조(거점동물원·수족관의 권역·업무 및 지정요건)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역”이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역 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보유동물 서식환경 개선에 대한 자문
2. 권역 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교육 및 체험 계획에 대한 자문
3. 환경부장관이 긴급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야생동물의 보호

4. 해양수산부장관이 긴급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양생물의 보호

③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4와 같다.

제20조(비용지원) 법 제2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육시설 및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
2. 야생동물 및 해양생물의 질병 및 치료에 관한 연구
3. 국내외 동물원 또는 수족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4.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사육 및 관리방법 개선 연구
5. 분류군별 수의사, 수산질병관리사, 사육사, 관리 전문인력 양성

제21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원 허가 및 변경허가
2.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허가증 발급
3.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현장조사
4. 법 제10조제1항 및 제27조제1호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및 그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청문
5.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반납의 수령
6.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7.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휴·폐원 신고의 수리

8.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물종 조사
9. 법 제1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 조치사항 통보의 접수 및 관계 행정기관에 장애 대한 협조 또는 지원 요청
10.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질병관리 조치사항 통보의 접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애 대한 통보
1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교란방지 조치사항 통보의 접수
12.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 자료의 접수 및 추가자료 제출 요구
13. 법 제22조에 따른 검사(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4. 법 제23조에 따른 조치명령
15.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 허가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에 대한 청문
16.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징수만 해당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동물원 질병관리지침 작성·배포 업무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족관의 허가 및 변경허가
2.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허가증 발급
3.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현장조사
4. 법 제10조제1항 및 제27조제1호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및 그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청문
5.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반납의 수령
6.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7.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휴·폐원 신고의 수리
8.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물종 조사
9. 법 제1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 조치사항 통보의 접수 및 관계 행정기관에 장애 대한 협조 또는 지원 요청
10.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질병관리 조치사항 통보의 접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애 대한 통보
1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교란방지 조치사항 통보의 접수
12.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 자료의 접수 및 추가자료 제출 요구
13. 법 제22조에 따른 검사(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4. 법 제23조에 따른 조치명령
15.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 허가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에 대한 청문

16.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징수만 해당한다)

제22조(업무의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조사 및 관리지침의 작성 및 제공 업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에 위탁한다.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 이전의 별표 5 제2호나 목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요건(제9조제1항 관련)

1. 보유동물 서식환경 및 전문인력 기준

(1) 동물원

구분	허가요건
<p>가. 보유동물 서식 환경 기준</p>	<p>1) 동물의 생태적 특성에 따른 적정 사육시설을 조성하여야 한다.</p> <p>가) 사육시설은 적정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p> <p>나) 자연채광이 주기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다만, 자연광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공조명을 활용할 수 있다.</p> <p>다) 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은신처, 잠자리, 바닥재, 햇대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p> <p>라) 포란, 포육, 휴식, 회복 등이 필요한 경우 격리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p> <p>마) 행동풍부화를 위한 물품 및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p> <p>2) 적절한 먹이 및 음수를 안전하게 제공하여야 한다.</p> <p>가) 섭식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양과 형태의 먹이가 제공되어야 한다.</p> <p>나) 음수가 요구되는 동물은 청결한 용기에 깨끗한 물이 제공되어야 한다.</p> <p>다) 안전한 먹이 공급을 위한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3) 안전 및 질병 관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가) 사육 및 전시시설은 울타리, 해자, 격벽, 철망 등을 활용하여 동물이 탈출할 수 없고, 관람객의 안전이 확보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p> <p>나) 관람객이 동물을 비정상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p> <p>다) 동물 질병관리를 위해 검역 및 방역시설, 진료 및 격리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p> <p>라) 동물을 보호·관리하기 위한 훈련프로그램 및 적정</p>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전문인력 기준	<p>다음의 전문인력을 모두 갖추는 것</p> <p>1)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1명 이상(비상근 인력을 포함한다). 다만, 비고 제3호의 동물을 보유한 경우 상근 수의사 1명 이상 또는 비상근 수의사 2명 이상</p> <p>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동물의 분류군별로 각 2명 이상</p> <p>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술사,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축산(산업)기사, 생물분류기사(동물),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또는 축산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p> <p>나)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수의학, 축산학, 동물학, 동물자원학, 애완동물학, 생물학, 생태·생리학 또는 산림자원학 등 관련 학과를 전공하여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p> <p>다) 「수의사법」 제3조의 2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을 가진 사람</p> <p>라) 동물의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p>

비고

1. 동물의 분류군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포유류
 - 나. 조류
 - 다. 양서류·파충류
2. 동물원이 보유한 동물의 종이 총 70종 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1)나목2)의 전문인력을 동물의 분류군에 관계없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원수만 갖추면 된다.
 - 가. 비고 제3호의 동물을 보유한 경우: 3명 이상
 - 나. 비고 제3호의 동물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2명 이상
3. 전문인력을 추가로 갖추어야 하는 동물
 - 가. 코끼리과·코뿔소과·하마과·곰과 전종
 - 나. 식육목 중 사자, 호랑이, 퓨마, 표범, 설표, 재규어, 스라소니, 치타, 코요테, 자칼, 늑대, 하이에나, 리카온 등

- 다. 영장목 중 고릴라, 침팬지, 오랑우탄, 필리핀원숭이, 개코원숭이 등
 - 라. 물소, 들소, 기린, 낙타 등
 - 마. 뱀목 중 노랑아나콘다, 붉은꼬리보아, 텐메릴보아, 그물무늬비단왕뱀, 자수정비단왕뱀, 버마비단왕뱀, 아프리카비단왕뱀, 살모사류, 코브라류, 바다뱀류, 아메리카독도마뱀, 멕시코독도마뱀 등
 - 바. 악어목 전종
 - 사. 왕도마뱀과 중 코모도드래곤왕도마뱀, 크로커다일왕도마뱀 등
- ※ 공통: 해당동물이 예시에 없는 경우, 위의 동물과 크기, 독성 및 안전도가 비슷한 종에 준하여 분류할 것.

(2) 수족관

구분	허가요건
가. 보유동물 서식 환경 기준	<p>1) 깨끗한 물과 적절한 영양 공급</p> <p>가) 수족관 보유동물에게 공급되는 물과 먹이는 깨끗하고 신선한 상태로 공급해야 한다.</p> <p>나) 수족관 보유동물의 종 및 개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영양을 공급하고 충분한 양의 먹이를 안전하게 공급해야 한다.</p> <p>다) 먹이 준비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모든 기구는 청결하게 세척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소독해야 한다.</p> <p>라) 먹이 공급은 지식과 경력이 있는 담당자가 수행하며, 담당자는 먹이공급량을 기록·유지하고, 수족관 동물의 상태를 파악하고 기록해야 한다.</p> <p>2) 건강한 사육환경 제공</p> <p>가) 수족관 보유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신체적, 행동적, 사회적, 심리적 요구에 맞는 사육시설을 제공하고, 최대한 자연 서식지와 유사한 조건을 제공하는 등 건강한 사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p> <p>나) 온·습도, 조명, 소음 등 사육환경은 보유동물의 특성에 맞게 구분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물과 전기는 비상시에도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안정된 먹이 공급과 건강한 환경 유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p> <p>다) 과도한 번식으로 인해 서식환경이 악화되거나 동물 복지가 훼손되거나 유전적 다양성이 결여되지 않도록</p>

	<p>체계적인 번식계획을 수립해야 한다.</p> <p>라) 고래목, 기각목 및 해우목 등 해양포유류를 사육하기 위해서는 생명유지장치(Life Support System, LSS)가 갖춰져 있어야 하며, 기온 및 수온 조절장치, 환기시설, 여과장치, 필요에 따른 조명장치가 포함되어야 한다.</p> <p>마) 사육수에는 보유동물의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화학물질이 기준치 이상 포함되지 않아야 하고, 외부 환경 및 관람객 등으로부터의 오염에서 차단되어야 한다.</p> <p>바) 사육수의 위생을 위하여 여과시설과 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소독을 위해 화학물질을 첨가하는 경우 유해한 잔류 물질이 남지않도록 하여야 하며, 적절한 수질 관리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p>
<p>나. 전문인력 기준</p>	<p>다음의 전문인력을 모두 갖추는 것</p> <p>1)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해양포유류를 사육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비상근 인력을 포함한다) 또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 1명 이상</p> <p>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생물의 분류군별로 각 2명 이상</p> <p>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산양식기사 또는 수산양식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p> <p>나)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수의학, 수산생물의학, 수산학, 동물자원학, 애완동물학, 생물학 등 관련 학과를 전공하여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p> <p>다) 수생생물의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p> <p>3) 수조 바닥면적이 1만㎡ 이상이거나 또는 보유한 생물종이 200종 이상인 경우 다음의 인력을 추가로 보유해야 한다.</p> <p>가)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1명(비상근 인력을 포함한다.) 또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 1명 이상</p>

비고

1. 생물의 분류군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포유류·파충류·조류
 - 나. 어류·양서류·무척추동물
2. 수족관이 보유한 생물 중 “나(어류·양서류·무척추동물)”에 해당되는 종이 총 70종 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2)나목2)의 전문인력 중 해양생물의 분류군 중 “나(어류·양서류·무척추동물)”에 해당하는 인력은 1명만 갖추면 된다.(단, 수조 바닥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서식환경에 대한 세부 기준은 「수족관 해양동물 서식환경 표준지침」을 참고 하되, 허가기관이 검사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기준 충족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한다.

2. 보유동물 질병관리계획

- 가. 질병관리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진료기록의 관리에 관한 사항
 - 2) 보유동물 질병의 예방 및 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 3) 보유동물에 대한 의약품 관리에 관한 사항
 - 4) 동물의 반출입 관련 검역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 5) 감염성폐기물 관리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 6) 보유동물 및 관리자의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7) 법 제17조제2항의 질병 발생에 따른 확산 방지조치 및 현황공개 등에 관한 사항
 - 8) 폐사동물의 부검 및 처리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 9) 상근 또는 비상근수의사에 의한 정기적 질병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나. 질병관리계획의 이행책임자와 계획의 이행을 위한 세부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3. 동물원 및 수족관 안전관리계획

- 가.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 가) 보유동물의 탈출방지 시설의 설치 현황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나) 보유동물이 사육시설 내에서 부상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다) 사육시설 설계 및 제작 시 내구성 및 화재에 강한 자재 사용 등 동물의

안전성 확보방안

라) 정전 등 비상시 안정적인 해수 공급 및 수온·수질관리 대책, 생명유지장치(Life Support System, LSS) 관리 대책(수족관에 한함)

2) 보유동물 탈출 시 대응에 관한 사항

가) 포획계획 및 포획방법에 관한 사항

나) 포획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

다) 포획도구 관리에 관한 사항

라) 비상연락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맹수나 맹독성 동물 등 위험한 동물에 대한 관리에 관한 사항

4) 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5) 관람객의 안전에 관한 사항

6) 화재나 재난 시 사람 및 보유동물의 대피에 관한 사항

나.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책임자와 계획의 이행을 위한 세부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4. 동물원 또는 수족관 휴·폐원시 보유동물관리계획

가. 휴·폐원시 보유동물관리계획

1) 보유동물의 기록 관리 및 유지계획

가) 종명 및 출처에 관한 기록

나) 반입 및 반출일자에 관한 기록

다) 개체수 및 동물인식표 관리에 관한 계획

나. 보유동물의 이관 또는 반입 및 반출계획

1) 보유동물의 반입 또는 반출 예정기관과 협의사항

2) 폐관 시 동물 이관 절차 및 계획

3) 보유동물의 수송절차와 방법에 관한 계획

다. 휴·폐원기간 동물원 내 보유동물 관리계획

1) 관리자 및 근무계획

2) 동물사육사 유지·관리계획

3) 보유동물 먹이 관리 및 공급계획

4) 수족관 해수공급 및 수온·수질관리 계획

라. 이관 또는 사육이 불가능한 경우, 보유동물의 인도적 처리에 관한 계획

1) 인도적 처리의 주체와 방법

2) 폐사체 처리 등 사후관리 방안

5. 보유동물 교육 및 체험 계획

가. 보유동물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목적

나. 보유동물별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장소 및 시설관리계획

다. 보유동물 종 및 개체별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방법 및 계획

1) 프로그램 진행 장소, 시간

2) 프로그램 진행의 구체적인 방법

3) 먹이를 주는 경우 먹이의 종류, 양, 급여 방법

4) 동물과의 교감이 필요한 경우 만지는 부위, 시간

라. 보유동물 안전관리계획

마. 관람객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

바. 사육사 및 지원 교육계획

6. 보유동물 복지 증진 계획

모든 동물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동물복지 증진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가. 행동 풍부화 계획

나. 긍정강화 계획

다. 복지증진을 위한 수족관 실무자 교육 및 전문성 강화 계획

라. 보유동물 복지 평가 및 복지 구현 계획

[별표 2]

과징금 산정기준(제1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기간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준에 따라 부과되는 기간을 말하며, 영업정지기간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영업정지 일수 × 1일당 부과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1억원으로 한다.

2. 개별기준

$\text{과징금 금액} = \text{영업정지일수} \times \text{1일당 부과금액(50만원)}$
--

[별표 3]

거점동물원·수족관 권역의 범위(제19조제1항 관련)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별표 4]

거점동물원·수족관 시설 및 인력요건(제19조제3항 관련)

1. 거점동물원

가. 시설 기준

- 1) 전체면적 1만㎡ 이상
- 2) 동물병원 (진료실, 검사실, 처치실, 입원실 등)
- 3) 교육 강의실 및 현장 교육장
- 4) 연구 실험시설 및 시험방사 훈련시설
- 5) 검역시설: 격리 검역장소와 질병을 직접 진단할 수 있는 시설
- 6) 수의 장비: 1. 흡입마취기, 2. 환축상태감시기(ECG, Pulse oximeter 등), 3. 초음파진단기, 4. 원심분리기, 5. 세균 배양기, 6. 위내시경, 7. 유전자증폭검사기기(PCR), 8. 효소면역진단기기(ELISA)

나. 인력 기준

- 1) 운영관리: 5명 이상 (예산관리, 운영지원, 외부교류, 홍보 등)
- 2) 사육, 복지: 8명 이상
- 3) 시설, 조경: 2명 이상
- 4) 수의: 4명 이상 (수의사 3명 이상, 수의간호인력 1명 이상)

2. 거점수족관

가. 시설 기준

- 1) 수조 바닥면적 1만㎡ 이상 또는 전체 수조 용량 5천㎥ 이상
- 2) 서식지외보전기관 및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 3) 교육 강의실 및 현장 교육장
- 4) 연구 실험시설 및 시험용 수조 시설
- 5) 검역시설: 격리 검역장소와 질병을 직접 진단할 수 있는 시설
- 6) 수의장비: 1. 흡입마취기, 2. 환축상태감시기(ECG, Pulse oximeter 등), 3. 초음파진단기, 4. 원심분리기, 5. 세균 배양기, 6. 위내시경, 7. 기타 수족관 동물의 치료 및 회복 장치

나. 인력 기준

- 1) 운영관리: 5명 이상(예산관리, 운영지원, 외부교류, 홍보 등)
- 2) 사육, 복지: 8명 이상
- 3) 시설 및 LLS(수질) 관리: 2명 이상
- 4) 수의: 4명 이상(수의사 2명 이상(상근 수의사 1명 이상 포함), 수산질병관리사 2명 이상)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관리 및 보유생물의 복지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제12조제2항에 따른 검사관의 출입·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법 제32조 제1항제1호	200	300	500
나.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개방하지 아니한 자	법 제32조 제1항제2호	150	200	300
다.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휴원·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3호	150	250	400
라.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법 제32조 제1항제4호	150	200	3차 위반 300 (4차 이상 위반시 500)
마.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2조 제1항제5호	200	250	300
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2조 제1항제6호	200	250	300
사.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2조 제1항제7호	150	200	300
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법 제32조 제1항제8호	150	200	250
자.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교육을 받지 아니하게 하거나, 해당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	법 제32조 제1항제9호	150	250	300

동물원·수족관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시설 명칭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팩스번호	
현장 소재지	(우편번호)		
조사목적	조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일간)	
동물 보유현황	총 ()종 ()개체 위험그룹 <input type="checkbox"/> / 주의그룹 <input type="checkbox"/> / 안전그룹 <input type="checkbox"/>		
시 설	사무실 <input type="checkbox"/> / 전시시설 <input type="checkbox"/> / 사육시설 <input type="checkbox"/> / 진료(격리)시설 <input type="checkbox"/>		
전문인력	수의사	상근 ()명/비상근 ()명	기타 상근 ()명/비상근 ()명
계획 수립여부	질병관리계획 <input type="checkbox"/>		안전관리계획 <input type="checkbox"/>
	휴·폐원시 보유동물 관리계획 <input type="checkbox"/>		교육·체험 계획 <input type="checkbox"/>
	복지 증진 계획 <input type="checkbox"/>		
계획의 적정성			
동물복지 및 시설기준 평가			
현장조사 결과 분석			
검사관 종합의견			
보완 필요사항			

※필요한 경우 별지 활용 가능

년 월 일

동물원·수족관 검사관명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검사관증

(앞쪽)

제 호
검사관증
사진 (배경그림 없이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인 것)
성명
환경부 (해양수산부)

55mm × 85mm (백상지 150g/m²)

(뒤쪽)

성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검사관임을 증명합니다. (위촉기간: 0000.00.00~0000.00.00) 년 월 일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연 락 처	(044) 201 - 7244